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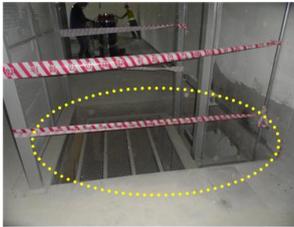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## 〔남산예정자락 재생사업(공원 및 주차장)〕

□ 점검일시 : 2018.08.16 (목)

□ 조치결과

◆ 점검자 : 전용현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작업장 엘리베이터 개구부의 안전난간이 연삭작업을 위하여 일시 해체되어 있어, 근로자 추락재해 우려가 있으니 개구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방지 조치 요망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2 (추락 재해예방 안전 시설 및 작업기준)</p>		<p>2018.08.16</p> <p>1.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작업장 엘리베이터 개구부의 안전난간이 연삭작업 중으로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라바콘을 설치하고 추후 작업완료 후 칸막이 설치 예정</p>	
		<p>2018.08.16</p> <p>1. 용기의 온도가 40℃ 이하가 되도록 위험물보관소 측면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차단</p>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위험물보관소의 LPG가스용기는 폭염으로 외부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장시간 직사광선을 받을 경우 축척된 열에 의하여 폭발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</p> <p>- 용기의 온도가 40℃ 이하가 되도록 위험물보관소 측면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바람.</p> <p>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3 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</p>		<p>2018.08.16</p> <p>1. 용기의 온도가 40℃ 이하가 되도록 위험물보관소 측면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차단</p>	

○ 기타 안전관리

- 현장사무실 앞 보행자  
통로는 경사진 보차도경  
계석으로 인하여 통행인  
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 
수 있으니 대책강구 요  
망.



2018.08.17

1. 현장사무실 앞 보행자  
통로 경사진 보차도경계  
석에 통행인의 전도사고  
예방을 위하여 경사로를  
설치

